[경기도 공고 제2023-895호]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공고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제19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

나.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23년 사업예산 (8개월분) : 591,368천원

- 인건비 : 206,624천원 (5명 인건비, 직무수당, 4대 보험료 등)
- 운영비 : 75,600천원 (사무실 임차료, 일반운영비 등)
- 사업비 : 301,600천원 (연구사업비, 식품안전 컨설팅 및 교육, 홍보비 등)
- 위탁사업비 : 7,544천원 (위탁수수료 2%)

라. 위탁기간 : 3년(2023. 5. 계약체결일 ~ 3년간)

2. 위탁사업 주요내용

가. 경기도형 식품안전 정책 개발 업무

【정책연구 분야(안)】

► 식중독 발생 실태(원인균, 시기별) 분석 연구 및 저감 방안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간편식 소비 실태 및 영향 분석
►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비만 증가(평생 건강문제) 실태 및 예방 대책
► 도내 영세취약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미래식품산업 주역, 대체육 개발 및 제조업소 육성 방안
► 식품 분야 현안 실태조사 및 연구
► K-Food 지정 및 육성

► 소규모 식품제조(건강기능식 포함) 분야 특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식품접객업(206천개, '22.12.31) 안전·위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 식품 제조분야 실태 조사 분석 및 지원 육성 방안

계 (개소)	소분·판매· 보존·운반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55,162	23,563	21,945	7,564	1,544	5,466

나.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업무
- 식중독 예방,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도민 식품안전 홍보 등

다. 식품 분야 영업소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HACCP[1]인증, GMP[2], 해외인증시스템 등 컨설팅
- (의무) 위생교육의 실효성 제고
-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라. 도민 대상 식품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 식문화 심포지엄, 식품안전 컨퍼런스 개최 등

마. 식품안전 전문가(풀 구성) 협의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3.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인력 기준

가. 구성인력 : 6명 (단장 1, 팀장(책임연구원) 1, 연구원 3, 행정원 1)

구 분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
지원단장 (1명)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해당 분야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무 : 비상근 근무(주1일 8시간 이상 근무)
팀장 (책임연구원) (1명)	지원단장을 보조하는 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무 : 상근(주5일)

1)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2)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구 분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
연구원 (3명)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연구원 수준의 기능 보유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무 : 상근(주5일)
행정원 (1명)	· 자격 : 학사 학위자 이상으로 행정적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자 · 근무 : 상근(주5일)

4. 신청자격 및 요건

가. 공고일 현재 식품안전 관련 사업경험이 있고 전문인력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2) 식품안전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참가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위탁조건

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자체 확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 시 가점 고려

나.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수탁계약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기관은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음

라. 수탁재산을 지원단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 대여, 매매 및 교환할 수 없음

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바. 위·수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

6.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4. 10.(월) ~ 5.1.(월)

나. 신청기간 : 2023. 4. 24.~ 5.1.(8일간) 09:00 ~ 18:00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제출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라.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8층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031-8008-3644)

7. 제출서류

가. 수 량 :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나. 규 격 : A4 사이즈 1권의 책자로 제본(목차, 쪽번호 명시, 좌 편철)

※ 제출서류 10부 중 원본(1부)을 제외한 사본의 경우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1) 제출서류 표지 1부【서식1】
2) 사무수탁 신청서 1부【서식2】
3) 기관(법인·단체) 현황 1부【서식3】
4) 이력 및 경력사항 1부【서식4】
5) 사업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 1부【서식5】
6) 사업계획 요약서 1부【서식6】
7) 성과관리방안 1부【서식7】
8) 예산편성 계획 1부【서식8】
9) 사업추진 일정표 1부【서식9】
10) 사업 수행인력 편성 1부【서식10】
11)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1부【서식11】
12) 서약서 1부【서식12】
13)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부【서식13】※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14】

15) 사용인감계 1부【서식15】

1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서식16】

라. 첨부서류 ※ 모든 첨부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기관(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또는 규약) 사본 1부

2) 기관(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3) 기관(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기관(법인)설립인(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단체등록증 각 1부

5) 기관(법인, 단체)결산서(최근 1년, 신설법인 제외) 1부

6)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7) 자산현황 증빙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8) 지원단장(예정자) 및 수행인력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9) 지원단장(예정자) 및 수행인력 경력·이력 증빙서류 1부.

10) 기타 증빙서류(평가인증 참여, 수상·보도자료, 봉사활동 실적 등)

11)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결과 1부

※ 연간 3억원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제출

8. 수탁기관 심의·선정 및 통보

가. 심의방법 :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발표(PT)를 종합하여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심의

나. 제안 발표

1) 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지

2) 발표시간 : 제안기관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 발표자료 10부 발표 당일 제출

3) 참석인원 : 제안기관별 제안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다. 선정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선정기준(안)		배점
계				100
수탁기관 수행능력 (20점)	기관의 사업관련 전문성 (15점)	◦ 해당분야의 전문성 (관련 분야 운영 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5 3 1
		◦ 전문인력 구성 현황 (연구원 평균 연구 경력)	6년 이상 6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10 7 4
	기관의 재무상태, 재정능력 (5점)	◦ 기관의 총 자산규모	100억 이상 70억 이상 100억 미만 70억 미만	5 3 1
사업추진 및 실행능력 (75점)	기관 인프라 적정성 (5점)	◦ 관련 인프라 확보 현황 (사무공간 등 시설, 장비)	우수 보통 미흡	5 3 1
	기관의 공익성 (5점)	◦ 식품 관련 공공사업 실적 및 성과 (최근 5년간) ※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사업계획 적정성 (25점)	◦ 사업의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의 충실성, 현실성	우수 보통 미흡	15 11 7
		◦ 사업 성과지표 수립 적정성, 추진 가능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예산집행 및 인력관리 적정성 (20점)	◦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조직 구성의 전문성,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지역사회 연계 및 도정 기여도 (10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및 연계 체계 구축 적정성, 도정 기여도	우수 보통 미흡	10 7 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5점)	◦ 근로조건 보호 충실성	우수 보통 미흡	5 3 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5점)	◦ 민간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제거 -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우수 보통 미흡	5 3 1
종합평가 (5점)	종합평가 (5점)	◦ 수탁기관으로서의 종합적인 관리 능력	우수 보통 미흡	5 3 1

라. 선정방법 :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평가결과 **평정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술한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추진 및 실행 능력 ▲수탁기관 수행 능력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마.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게재

9. 유의사항

가. 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 법인 및 단체 등에 있음

마. 신청기관은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관련 심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됨

사.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함

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및 경기도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는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자. 본사업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라야 함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031-8008-3644) 문의

붙임 민간위탁 제출서류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